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합5203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0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합520313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강석민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행

담당변호사 김세진, 신재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재훈

변론 종결2020. 12. 4.

판결 선고2021. 1. 22.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1. 19. 체결된 양도계약을 221,377,4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1,377,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7. 1. 19. 체결된 양도계약을 221,377,4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은 2016. 11. 28.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DSME 출입문 및 CCTV 설치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에게 C가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CCTV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6. 12. 29. 물품대금 60,636,345원 상당의 CCTV를 D에게 직접 납품하였다.

2) C는 2016. 12.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물품대금 지급약정 확약서

첫째.

○ 프로젝트명: E 외곽 울타리 및 출입문 등 CCTV HD NETWORK CAMERA

○ 공급일: 2016년 12월 29.일

○ 납품금액: 일금 육천육십삼만육천삼백사십오원(₩60,636,345)

상기 프로젝트 물품공급은 원고로부터 CCTV HD NETWORK CAMERA(총 26BOX)를 C가 공급받고, D로 물품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에 대하여 물품대금 결제받은 (2017년 1월 16.일) 다음 날(2017년 1월 17.일)에 원고에게 대금지급(₩60,636,345)을 하기로 확약합니다.

둘째.

지난 2015년 12월 22.일, 2016년 2월 29.일, 2016년 3월 21.일 발생한 미수채권에 대하여 E 외곽 울타리 및 출입문 등 CCTV HD NETWORK CAMERA 프로젝트 물품대금을 받은(2017년 1월 16.일) 다음 날(2017년 1월 17.일)에 C는 원고에게 미수 채권금액(₩160,741,140)을 지급하기로 확약합니다.

물품대금 지급 약정 확약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약정 확약 총금액은 일금 이억이천일백삼십칠만칠천사백팔십오원(₩221,377,485)입니다.

-아래-

미수채권	139,169,818	6,958,491	146,128,309	14,612,831	160,741,140	※ 단위: 원, VAT포함
F	52,499,000	2,624,950	55,123,950	5,512,395	60,636,345	
합계금액	191,668,818	9,583,441	201,252,259	20,125,226	221,377,485	

3) C는 2016. 12. 29. 원고에게 2017. 1. 17.까지 위 221,377,48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 G 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720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피고는 C와, 2015. 5. 21. 계약금액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H 상품판매 및 정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 계약금액을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H 상품판매 및 정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1) C는 2017. 1. 19. 피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등 기왕·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에 대한 924,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고 한다), C의 D에 대한 291,5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통지 위임을 받아 2017. 1. 23.경
 I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I에게
 도달하였다.

2) C는 D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그 돈 중 일부인 143,000,000원을 2017. 2. 17.
 피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는 I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1552호), 위 법원은 2017. 11. 30. 'I는 피고에게
 523,276,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I가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7나59010호), 부산고등법원은 2019. 6. 13. I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I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9. 1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221,377,485원(= D에 납품한 물품대금채권 60,636,345원 + 미수
 물품대금채권 160,741,14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C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C로부터 2017. 2. 17. 143,000,000원을 변제받고, 관련판결에 기하여
 I로부터 양수금채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221,377,4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017. 6. 20.경(또는 2017. 11. 23.경)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제소기간 1년이 경과한 2019. 4. 3.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가 2017. 3. 6. I를 통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액을 초과하여 261,516,035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J이 C의 대표이사 K를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2018. 10. 23. 부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2017년 6월 19.일에 제가 부산에 직접 내려왔습니다. (중략) I의 L 이사를 만났는데, L가 저에게 말하길 '피고소인(K)이 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다. 저희가 피고소인과 한 계약은 모두 피고소인이 피고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0일에 저에게 문자로 2017년 1월 19.일에 피고소인과 피고가 작성한 채권양도서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J이 위 K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2018. 6. 20. 고소인(J)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고소인(K)이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여 버린

것을 I 이사 L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위 L가 위 J에게 2018. 6. 20.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찍은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J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날짜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러한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원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K가 파산선고(부산지방법원 2017하단848호)를 받은 사실을 2017. 11. 23.경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7. 1. 19.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9. 4.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가 2017. 3. 6. 원고에게 합계 261,516,035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I가 M 신축공사에 CCTV 시스템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C가 위 공급계약 이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구매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261,516,035원(= 공급가액 237,741,850원 + 부가가치세 23,774,185원)인 사실, I가 C를 대신하여 위 물품대금 261,516,035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0 내지 12,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영구청장,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 대하여 660,000,000원, 원고에 대하여 221,377,485원, N 주식회사에 대하여 394,130,000원, ○ 주식회사에 대하여 31,605,000원, P에 대하여 21,136,500원, Q 주식회사에 대하여 3,091,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의 2016. 12. 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계 1,339,164,209원, 부채총계 1,569,356,519원으로서 자본총계가 -(음)230,192,310원이었고, 2016. 12. 31. 기준으로 713,178,609원의 당기순손실이 있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C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과세사실이 없던 점, ③ C는 2017. 5. 8.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무자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제1, 2채권은 C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불과 4개월 후에 C가 폐업할 정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의 무자력의 정도가 중한 편이었던 점, ③ 피고는 C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2.경부터 지속적으로 지급을 독촉하여 오면서 C의 자력 상황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C가 그보다 훨씬 다액인 1,215,500,000원(= 이 사건 제1채권 924,000,000원 + 이 사건 제2 채권 291,500,000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와 C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변제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통모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는 원·피고 외의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판단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R 주식회사(이하 'R'라고만 한다)가 제공하는 C에 관한 기업정보조회에 의하면 2017. 1.경 기업평가등급이 'B0'인 사실, R는 'B0'등급은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정의한 사실, C의 대표이사 S는 2019. 5. 2. 위 부산고등법원 2017나59010호 사건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경까지 '연 매출 20억 원 이상의 회사'라고 증언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R상 기업정보는 매년 5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7. 1.경의 C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점, ② 피고는 C에 대한 미수금이 늘어나자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을 상당히 초과한 금액인 1,215,5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점, ④ 피고와 C 사이의 거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는 C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담보나 대물변제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의 취소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可分)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제1, 2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것인데, 이때 이 사건 제1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제2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가분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가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목적물인 이 사건 각 채권의 합계액이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훨씬 상회하는 점, 피고가 관련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피고가 위 금전을 변제로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221,377,4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이 상당하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I로부터 양수금을 변제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221,377,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곤

판사김경선

판사전경세

별지